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
------	----

제출일자 : 1998. 4. 7.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된 농지관련법률을 통합하여 농지법이 제정('94. 12. 22 법률제4817호)시행됨에 따라
- 현행조례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인용조항을 농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 조문에 따라 개정 함
- 농지임대차관리법 인용조항을 농지법 관련 조항으로 개정함
- “이,동 개발위원회”를 “행정리개발위원회”로 “리동장”을 “이장”으로 개정
- 이장이 추천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한 농업인으로 함.

■ 개정근거

- 농지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5조, 제68조제3항, 제69조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시행령“으로한다.

제4조 제1호내지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제5호”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6호”로 하며, “제9호”를 “제7호”로 한다.

1.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영 제30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정
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안의 농지취득 자격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
6.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제6조제1항중 “이, 동장은”을 “이장은”으로 하고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며, “이, 동 개발위원회”를 “행정리 개발위원회”로 하고, “영 제14조제1항 요건을 갖춘 농민”을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한 농업인”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이, 동”를 “행정리”로 하고, 제4항중 “이, 동별”을 “행정리별”로 한다.

제8조중 “영 제23조”를 “영 제8조”로 하고 “농지매매”를 “농지취득자격”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영 제21조제1항제4호”를 “법 제47조제4항”로 한다.

제11조중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후보자 추천서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호 및 영 제14조”를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을 삭제하며, “리(동)장”를 “이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지임대차관리법</u> (이하 “법”이라한다.) 및 <u>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u>(이하 “영”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u> 2. <u>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관한 조정</u> 3. <u>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u> 4. <u>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u> 5. <u>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여부의 확인</u> 	<p>제1조(목적) ----- <u>농지법</u> -----<u>농지법시행령</u> ----- ----- -----</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48조 및 영 제6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u> 2. <u>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정</u> 3. <u>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안의 농지취득 자격확인</u> 4. <u>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u>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6.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개정 1995. 4. 22 조례 제1360호)</u></p> <p>7. <u>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업의 처리</u></p> <p>8. <u>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u></p> <p>9. <u>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하는 사항의 처리</u></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p> <p>① 각 <u>이, 동장은</u> 군수로부터 <u>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u>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u>이, 동개발위원회</u>를 소집하여 <u>영 제14조의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u>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원칙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u>이, 동개발위원회</u>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5. (현행 제7호와 같음)</p> <p>6. (삭제)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p> <p>7.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p> <p>① <u>이장은</u> ----- <u>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u> ----- ----- <u>행정리개발위원회</u> ----- <u>3년이상</u> <u>농업을 경영한 농업인</u> ----- ----- -----</p> <p>② -----<u>행정리</u> ----- ----- -----</p>

현행	개정안
<p>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장 또는 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u>이동별</u>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무 수행결과 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u>영 제23조의</u> 규정에 의하여 <u>농지매매</u>의 확인을 한 위원은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u>영 제21조 제1항 제4호</u>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임차료의 상한) <u>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u>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p>	<p>④ ----- -----<u>행정리별</u> ----- ----- ----- -----</p> <p>제8조(위원의 임무 수행결과 보고) ----- -----<u>영 제8조의</u> -----<u>농지취득자격</u> -----</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u>법 제47조 제4항</u>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임차료의 상한) <u>법 제25조</u> ----- ----- -----</p>
<p>[별지 제1호 서식] 위 사람은 <u>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호 및 영제1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u>○○리(동)</u>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p>	<p>[별지 제1호 서식] 위 사람은 <u>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2호</u>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u>○○리</u>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p>